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4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송암미술관이 2007년 12월 17일과 검단선사박물관이 2008년 11월 27일 각각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 편입되어 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범위를 분관을 포함하는 내용과

나. 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를 시립박물관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시설 사용에 따른 허가, 사용시간,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 제반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 안 제21조)

다.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전문을 정리함. (안 제1조, 안 제3조 ~ 안 제6조, 안 제8조 ~ 안 제9조, 안 제22조 ~ 안 제24조, 안 제26조 ~ 안 제29조, 안 제31조 ~ 안 제33조, 안 제36조 ~ 안 제37조)

라. 송암미술관은 시립박물관의 분관으로서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 조례」는 폐지토록 함. (부칙 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3일(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FAX : 032)440-8764
- E-mail : jbt129@korea.kr(전화 : 032-440-6224)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범위는 인천광역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인 분관을 포함한다.

제2장 전시실 및 시설의 사용

제3조(개관과 휴관) ① 박물관은 다음과 같은 휴관 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관공서의 공휴일 다음날
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 ② 시장은 지방시찰단 또는 관공서·학교·그 밖의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4조(관람·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과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관람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2. 매표시간 ; 09:00부터 17:30까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박물관의 진열품을 관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관람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박물관에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무료관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3. 국·공립의료기관에서 정양중인 상이군경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그 유족과 가족
9. 학술연구 목적 또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람권을 발행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6세 미만의 어린이
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전시실 관람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열품에 손을 대지 말 것
2. 허가 없이 진열품을 촬영 또는 모사하지 말 것. 다만, 연구의 목적으로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험물 또는 거대한 물품을 휴대하지 말 것
4. 박물관 안에서는 흡연 또는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
5.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진열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오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허가) ① 시설(기획전시실·영상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

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2. 박물관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3. 사용신청자가 그 시설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5.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시장은 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료) ①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1일 또는 4시간 단위로 하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와 그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

부 감면

2.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와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에는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고,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8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0조(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행사 홍보물을 박물관내에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22조(박물관운영위원회) 법 제7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향토사와 전통문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문화계, 예술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 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물관리과장이 된다.

⑥ 자료의 수집·전시·감정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안에 박물관자료평가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심의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등 박물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향토사와 박물관 자료에 관한 연구활동 또는 사회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4. 소속 기관설치, 다른 박물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회의 등) ①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3.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제27조(필요경비 지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심의회

제28조(심의회 구성) ① 제23조제6항에 따른 심의회는 분야별로 3명 이상으로 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박물관 유물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1. 전시·수장유물과 구입유물의 고증
2. 유물의 진위 여부 및 적정가격
3. 국내·외 경매 응찰 유물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회의 등) ① 관장은 구입할 유물 및 소장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5장 유물 수집

제31조(박물관자료의 정의 등) ①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발굴·채집·구입·이관·기증·기탁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유형의 문화적 소산물을 말한다.

② 자료의 고증·감정 또는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소집한다.

③ 자료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자료구입) ① 시장은 박물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유물은 박물관에서 평가대상 유물을 선정한 후 심의회 위원들의 감정을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③ 경매유물(해외경매를 포함한다)은 심의회의 실물평가 결과에 따라 관장이 응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자료의 구입은 시보 고시·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자료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평가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자료기탁) ① 시장은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기탁자에게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기탁 또는 반환 시에는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 ③ 기탁 받은 자료는 박물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 ④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소재가 불명일 경우, 일정기간 공고 후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 ⑤ 기탁기간 만료 후 기탁자의 반환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기탁자의 승인을 얻어 기증 자료로 처리한다.

제35조(자료관리) ① 시장은 소장 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또는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6조(수장고 관리)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6장 이용 및 대여

제37조(자료이용과 대여) ① 자료의 이용이라 함은 박물관자료에 대해 모사·사진촬영·복제·복사·타본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시장은 박물관 운영과 소장 자료의 원형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소장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25조에 따라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적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3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송암미술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제5조, 제37조 관련)

박물관 관람료		
구 분	요 율 구 분	관 람 료
개 인	1. 18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무 료
	2. 군 경	200원
	3. 어 른	400원
단 체 (20인 이상)	1. 군 경	100원
	2. 어 른	200원
박물관 자료 이용료		
구 분	수 량	이 용 료
사 진 촬 영	1 점	10,000원
탁 본	1 점	10,000원
모 조(실 측)	1 점	10,000원
모 사(실 측)	1 점	10,000원
사진원판사용	1 점	5,000원

【별표 2】

시 설 사 용 료 (제15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사용기준	사용료	비 고
본관	기획전시실	1일	50,000	
	영상실(석남홀)	4시간	40,000	
송암미술관	기획전시실	1일	35,000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1일	20,000	

※ 사용료 계산

- 사용기준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야간(18시 이후), 공휴일, 휴일은 해당 기준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 사용시간 초과시 매1시간 초과 마다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하여 계산
단,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시설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제11조 관련)

신 청 자 기관(단체)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 주 소		연락처	사	
			자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사 용 시 설	구 분	당 초	변 경	
	기획전시실			
	영 상 실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기관, 단체, 대표자 성명) (인) 인천광역시립박물관장 귀하				

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관계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제7조(운영 위원회) - 제8조(재산의 기부) - 제12조(설립과 운영) -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제6조(박물관 · 미술관 운영 위원회) - 제7조(협 의)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운영 위원회)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기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6조(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두는 박물관·미술관 운영 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운영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소재한 지역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그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시설의 명세서 및 평면도
3.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 내역서
4. 조직 및 정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립박물관이나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